

형 법

문 1. 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음모 후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하였더라도 중지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 ② 예비죄는 기본범죄의 수정형태이고 예비죄의 실행행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비죄의 공동정범,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그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습관성의약품제조죄의 미수가 된다
- ④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 ⑤ 야간에 아무도 없는 카페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을 꺼내들고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범이다

문 2. 甲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사례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 놀란 나머지 119에 신고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乙의 집은 다 타 버리고 말았다
- ②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라고 교사하고, 乙은 이를 받아들여 丙에게 독약을 먹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丙을 병원으로 옮겨 살렸다
- ③ 甲은 乙, 丙과 더불어 丁을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현장에서 乙, 丙과 함께 丁을 때리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으나 乙과 丙은 丁을 강간하였다
- ④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해 독약을 먹였으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 乙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여 乙을 병원으로 신고 가도록 함으로써 乙의 목숨을 구하였다
- ⑤ 甲은 乙의 집에서 100만원을 훔쳤으나 乙이 매우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음날 乙이 없는 사이 100만원을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

문 3.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② 우연방위효과에 관한 불능미수설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 ③ 일원적 인적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④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어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⑤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서도 그 내용이 정당화 목적 또는 동기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문 4. 甲은 丙을 살해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자신이 직접 살해하면 쉽게 의심받을 것 같아 친구인 乙에게 丙을 살해해 주면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乙은 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소심하여 맨 정신으로는 丙을 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상태에서 丙의 집 근처에서 丁을 丙으로 오인하고 살해하였다. 곧 이어 乙은 丁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빼가지고 현장을 떠났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甲과 乙의 죄책은?

甲의 죄책

乙의 죄책

- | | |
|--------------|---------------|
| ① 살인죄의 교사범 | 살인죄 |
| ② 살인미수죄의 교사범 | 살인죄와 절도죄 |
| ③ 살인죄의 교사범 | 살인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
| ④ 살인죄의 교사범 | 살인죄와 절도죄 |
| ⑤ 살인예비·음모죄 | 살인죄 |

문 5.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 ②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는 과실범에서는 공동의 범행결의와 이에 근거한 기능적 행위수행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한다
- ③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견해 중 주의의무위반의 공동과 과실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다
- ④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는 과실범의 공동현상을 동시범이론으로 설명한다
- ⑤ 인과관계의 입증에 곤란한 사례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게 되면 과실범의 미수로 무죄가 되는 형사처벌의 흠결을 피할 수 있고 책임원칙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 6.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윤락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더라도 그 대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했고,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한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위조된 약속어음을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속이고 기존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해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그 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⑤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과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문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에게 丙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한 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甲은 살인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 ② 甲이 乙에게 丙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방화를 한 경우, 甲은 무죄이다
- ③ 甲과 乙이 과도를 들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甲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공모한대로 丙의 집에 들어가 丙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甲은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을 경우, 甲은 특수강도죄로 처벌된다
- ④ 甲이 乙에게 丙이 거주하는 집에 방화하도록 교사하였으나 乙이 방화는 하지 않고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 ⑤ 甲이 乙에게 丙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이 丙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甲은 강도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문 8. 다음 사례에서 甲, 乙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함께 술을 마시던 乙이 화장실에 간 사이 옆에 있던 丙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였다. 자리로 돌아오다 이를 발견한 乙은 甲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丙을 폭행하였고, 丙은 乙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
- ② 乙이 강도의 의사로 丙을 폭행하여 실신시킨 후 우연히 그 곳을 지나던 甲이 이러한 사정을 듣고 乙과 공동으로 丙의 재물을 가져갔다(강도죄의 공동정범)
- ③ 甲과 乙은 丙을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약속 당일 甲은 범행을 하기 싫어 저수지로 나가지 않았지만 乙은 丙을 만나 그를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였다(살인죄의 공동정범)
- ④ 甲이 숲에서 丙을 강간하고 가버렸는데, 얼마 후 우연히 숲을 지나가다 丙을 발견한 乙이 다시 丙을 강간하였다. 丙은 두 사람의 강간 도중 어깨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누구의 강간행위에 의한 것인지는 판명되지 않았다(각각 강간죄의 단독정범)
- ⑤ 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甲, 乙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丙을 상해하기 위해 각각 벽돌을 던졌는데 丙은 벽돌을 맞고 사망하였으나 누가 던진 벽돌에 의한 것인지는 판명되지 않았다(각각 상해치사죄의 단독정범)

문 9. 다음 기술들을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중 반드시 어느 하나로 분류할 경우, 다른 분류에 속하는 것은?

- ① 이 정범개념에 의하면 교사·방조범에 대한 처벌규정은 처벌 확장사유가 된다
- ② 이 정범개념에 의하면 정범과 공범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고 단일정범개념으로 충분하다
- ③ 형법의 규정은 이 정범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이 정범개념은 범죄의 참가형태를 보다 분명하게 구별해 줌으로써 다른 정범개념보다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더 잘 부합한다
- ⑤ 이 정범개념에 대해서는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문 10.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 ②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결과적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작위범에 한한다
- ③ 진정결과적가중범만 인정하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형벌이 높아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
- ④ 형법 제15조 제2항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절도치상죄나 사기치사죄를 신설한다면 이른바 직접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문 1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보다는 보호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수소(受訴)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③ 성인범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을 도입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④ 위법성조각사유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던 행위를 형법조문 해석에 대한 판례 변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2. 배임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신설에 의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② 배신설에 의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한다
- ③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금융기관의 담당 직원이 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 신규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행위자가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13.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의 해석과 관련하여 I, II, III의 세 견해가 있고,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A, B의 두 견해가 있다고 가정한다.(다만, 영아살해죄에 가공한 자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은 적용이 없고 같은 조 단서가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할 것)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례를 검토할 때, I, II, III과 A, B의 견해의 조합에 따른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 I. 영아살해죄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의미한다

II. 영아살해죄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이란 산모만을 의미한다

III. 영아살해죄에서 말하는 ‘직계존속’이란 법률상의 직계존속과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모두 의미한다

A. 제33조 단서의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란 비신분자는 항상 경한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B. 제33조 단서의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란 신분에 따른 책임 개별화를 선언한 것이므로 비신분자는 통상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례〉

甲男과 乙女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동거하던 중 乙이 임신하여 출산하게 되었다. 분만 직전 甲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乙에게 영아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甲의 교사를 받은 乙도 이에 동조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직후 신생아실에 몰래 들어가 영아를 살해하였다.

- ① I + A → 살인죄의 교사범
- ② III+B → 살인죄의 교사범
- ③ II+B → 영아살해죄의 교사범
- ④ II+A → 살인죄의 교사범
- ⑤ III+A → 영아살해죄의 교사범

문 1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④ 공무원이 수뢰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문 15.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에게 입질(入質)한 자기의 재물을 기망하여 도로 찾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② 환자가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일시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③ 자동판매기에 동전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투입하여 판매물을 꺼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절도범으로부터 그 정을 알면서 자기앞수표를 취득하여 이를 음식대금으로 지급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경우 장물취득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⑤ 甲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 없는 乙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 16. 컴퓨터와 관련한 범죄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특별법위반은 논외로 함)

- ① 전산실의 서버컴퓨터 일부를 손괴하여 수리에 1주일 이상 걸리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손괴죄는 불문)
- ②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수록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데이터의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였다면 손괴죄가 성립한다
- ③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일부가 물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④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⑤ 전송중인 데이터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포함된다

문 17. 다음 각 사례의 죄수관계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범한 경우

ㄴ. 강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ㄷ. 배우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도 배우자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간통한 경우

ㄹ.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ㅁ.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된 바코드와 비닐 랩 포장을 뜯어내고 재포장한 다음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수일 동안 다수인에게 위 식품을 판매한 경우

ㅂ.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한 경우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① ㄱ	ㄱ, ㄷ, ㅂ	ㄴ, ㄹ	
② ㄷ	ㄴ, ㄷ	ㄱ, ㅁ, ㅂ	
③ ㄱ, ㅂ	ㄷ, ㄹ	ㄱ, ㄴ	
④ ㄷ, ㅁ	ㄱ, ㄷ	ㄴ, ㅂ	
⑤ ㄷ	ㄷ, ㅂ	ㄱ, ㄴ, ㅁ	

문 18. 공무원 甲이 업자인 乙로부터 납품과 관련하여 뇌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받아 그 중 6장은 자신의 기존 통장에 예금해 두었으며, 나머지 2장은 자신의 진금을 위하여 상급자인 丙에게 뇌물로 제공하였고 丙은 이를 모두 소비하였다. 그런데 후에 문제가 발생하자 丙은 현금 200만원을 甲에게 반환하였고, 甲은 이 돈에다 위 통장에서 찾은 600만원을 보태 乙에게 8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할 금액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로부터 800만원 몰수
- ② 甲으로부터 600만원 추징, 乙로부터 200만원 몰수
- ③ 甲으로부터 600만원 몰수, 丙으로부터 200만원 추징
- ④ 甲으로부터 800만원 추징, 丙으로부터 200만원 추징
- ⑤ 甲으로부터 600만원 추징, 乙로부터 800만원 몰수

문 19. A와 B는 가벌적 불능미수와 불가벌적 불능범의 구별에 대해 각각 아래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A와 B의 견해에 따라 아래의 각 사례를 검토할 때 A와 B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A :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 그렇지 않으면 불능범이다

B : 행위 당시에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위험성이 인정되면 불능미수, 그렇지 않으면 불능범이다

<사 례>

ㄱ. 甲은 다방에 놓여있는 설탕을 사카린으로 오인하고, 사카린을 먹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X의 커피에 타서 먹였지만, X는 죽지 않았다.

ㄴ. 乙은 치사량이 5g으로 표시된 독극물을 구입하여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진 0.1g이 치사량이라고 생각하고 X의 커피에 0.1g을 타서 먹였지만, X는 죽지 않았다.

ㄷ. 丙은 유효사거리 100m, 최대사거리 120m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총을 가졌다. 丙은 X가 110m 전방에 있지만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X는 140m 전방에 있었고 일반인은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 丙의 총알은 X에 미치지 못하였다.

ㄹ. 일반인은 진열장에 세워진 마네킹 4개를 모두 마네킹으로 알고 있지만 丁은 그 중의 하나가 사실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인으로부터 은밀히 들어서 알게 되었다. 丁은 그 사람을 상해하려고 몽둥이로 내려쳤으나 주인이 5분전에 사람을 마네킹으로 바꾸어 놓았다.(손괴죄는 불문)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ㄷ, ㄹ

문 20. 甲은 대낮에 절도의 의사로 乙의 집에 침입하였으나 때마침 방에서 나오던 乙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乙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주거침입죄와 강도치상미수죄의 경합범
- ② 준강도죄와 폭행치상죄의 경합범
- ③ 주거침입죄와 폭행치상죄의 경합범
- ④ 절도미수죄와 폭행치상죄의 경합범
- ⑤ 주거침입죄와 강도치상죄의 경합범

문 21.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체의 일부만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성립한다
- ② 남편의 부재 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③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와 같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④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소유자가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⑤ 사인(私人)이 현행범을 추격하던 중 범인의 부(父)의 집까지 쫓아 들어가 부(父)와 시비 끝에 부(父)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문 22. 긴급피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정당방위는 위법(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정 대 정(不正 對 正)’의 관계로 표현됨에 비하여, 긴급피난은 ‘정 대 정(正 對 正)’의 관계로 표현되기 때문에 위난의 원인은 정(正)임을 요한다
-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긴급피난의 제한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상 의무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③ 정당방위에 있어서 공격의 현재성과 긴급피난에 있어서 위난의 현재성은 다같이 ‘직접 임박한 것’, ‘방금 시작된 것’ 또는 ‘아직도 계속 중인 것’을 의미하고 그 성립범위는 동일하다
- ④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은 개인적 법익은 물론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포괄하는 것에 비하여,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은 개인적 법익에 국한된다
- ⑤ 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 피난행위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23. 판례에 의할 때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하였다면 공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 ②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해당한다
- ③ 위조우표취득죄 및 동행사죄의 행사에는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표를 우편요금의 납부용으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표수집의 대상으로서 매매한 경우도 포함된다
- ④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 ⑤ 일본국의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함으로써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자동판매기가 일본국의 500엔짜리 주화로 오인한 경우에도 통화변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문 24.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죄의 본질에 관하여 추구권설을 취하는 입장은 대체장물의 장물성을 인정한다
- ②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③ 가입권자가 전화관서로부터 전화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인 전화가입권이 강취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④ 채권의 담보로 교부받은 수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를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 ⑤ 절취한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 본범으로부터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운전해 준 경우 장물운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 25. 판례에 의할 경우 甲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 ㄱ. 甲이 2000. 10. 1. A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2001. 1. 5.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2000. 12. 1. 범행한 B죄가 발각되어 2001. 3. 20. 제1심 법원에서 B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 ㄴ. 甲이 ㄱ.과 같은 사안에서 B죄를 2001. 1. 20. 범한 경우
- ㄷ. 甲이 2000. 7. 1. A죄를 범하여 같은 해 9. 1.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 항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 2001. 1. 1. 새로이 B죄를 범하였다. 그 후 대법원에서 같은 해 3. 2. 甲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같은 해 3. 20. 제1심 법원에서 B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문 26. 甲은 친구 乙과 야영을 하던 중 언쟁을 벌이다가 새벽 1시경 乙을 살해한 후 잠이 들었다. 새벽 5시경 깨어난 甲은 乙의 옷 안에 예금통장과 도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오전 10시경 은행에 가서 乙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30만원을 인출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자(死者)의 점유를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② 사자(死者)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사자(死者)의 생전(生前)점유는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甲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 ③ 사자(死者)의 생전(生前)점유 및 사자(死者)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에 의하면, 甲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 ④ 판례는 사자(死者)의 상속인의 점유를 인정하여, 甲이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된다고 한다
- ⑤ 판례는 甲이 乙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 乙의 생존일자 중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를 인정한다

문 27.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퇴거불응죄와 같이 구성요건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 ②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 ③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 ④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 ⑤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구호조치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28.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벌규정은 형법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이른바 행정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로서 보호관찰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근거에 대해 무과실책임설이 과실책임설보다 논리적이다
- ③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할 경우 무과실책임설보다 과실책임설이 책임주의에 좀 더 충실하다
- ④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므로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근거에 대해 무과실책임설을 따른다
- ⑤ 법인실체설과 법인의제설 등 법인의 본질에 관한 이론과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는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문 29. 다음 중 (A), (C), (E)에 들어갈 단어를 ㄱ 내지 ㅇ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A)은(는)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와는 독립된 책임요소이기 때문에 위법성에 관련되는 착오는 모두 책임 영역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도 (B)(으)로 취급된다. 이에 반하여 (C)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D)와(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다시 형법 제1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유추적용설과 (E)은(는) 조각되지 않지만 고의책임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F) 등으로 나눌 수 있다

ㄱ. 엄격책임설 ㄴ. 책임 ㄷ. 구성요건적 착오
 ㄹ. 엄격고의설 ㅁ. 제한적 책임설 ㅂ. 법률의 착오
 ㅅ.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ㅇ. 구성요건적 고의

- ① ㄱ, ㅁ, ㄴ
- ② ㄱ, ㄹ, ㅇ
- ③ ㅁ, ㄹ, ㅇ
- ④ ㄹ, ㅁ, ㄴ
- ⑤ ㄱ, ㅁ, ㅇ

문 30. 甲, 乙, 丙은 등산을 하기로 하였다. 甲은 평소 자신과 성격차이가 심한 丙이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등산가기 전날 밤 甲은 설사약을 탄 음료수를 丙에게 주어 마시도록 하였다.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乙도 甲과 같은 생각으로 丙에게 설사약을 탄 간식을 주었다. 甲과 乙이 준 설사약은 각각 만으로는 丙이 설사할 수 없는 적은 양에 불과하였으나, 丙은 두 사람이 준 설사약을 모두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계속되는 설사로 인해 등산에 동행하지 못했다. 甲,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과 乙은 의사의 연락이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 ② 고의에 관한 인용설에 의할 경우 甲에게 丙을 상해할 고의가 있었다
- ③ 고의에 관한 의사설에 의할 경우 乙에게 丙을 상해할 고의가 있었다
- ④ 甲과 乙에 대해서는 상해죄의 동시범특례(형법 제263조)가 적용된다
- ⑤ 甲과 乙이 의사연락하에 사례의 행위를 하였다면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문 3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범의 처벌근거에 대한 견해 중 불법가담설에 의하면 책임 없는 정범에 대한 공범성립은 불가능하다
- ② 교사자의 고의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고 정범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할 고의를 의미한다
- ③ 책임무능력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 ④ 소위 대항범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대항범 상호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한다

문 3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 라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 또는 협박죄만 성립한다
- ② 의사가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자의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는 종전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등으로 해석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③ 자구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권은 보전할 수 있는 권리임을 요하므로, 명예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피해자의 승낙에서 승낙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승낙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⑤ 명예훼손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私益的)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문 33. 문서 또는 유가증권과 관련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어야 하며, 재산권은 물권·채권·사원권 등의 사법적 권리와 공법상의 지위·권한 등의 공법적 권리를 포함한다
- ②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 유통성이 전혀 없거나 아주 약한 각종 복권·식권·승선권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차용증·영수증 등은 법률관계의 존부나 내용을 증명하는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유가증권이다
- ④ 판례에 의하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타인의 후불식 공중전화카드를 본인의 승낙 없이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⑤ 예금통장·물품예치표·물품보관증·철도수하물상환증 등은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므로 유가증권이다

문 34. 성년인 피고인 甲이 괄호 안의 법정형을 갖는 A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B죄(15년 이하의 징역), C죄(1년 이하의 징역)를 범하였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법원이 경합범 가중을 하여 甲에게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처단형)의 범위는?(다만, 다른 가중감경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1년 이상 21년 이하 ②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 ③ 1월 이상 25년 이하 ④ 1월 이상 21년 이하
- ⑤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문 35. 법률의 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과 그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엄격고의설 -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거나 과실범의 형벌이 고의범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② 제한적 고의설 - 과실로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효과를 인정하면서, 과실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범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 ③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위법성조각사유가 범죄론에서 가지는 독자적 기능을 무시한다
- ④ 엄격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감정에 반할 수 있다
- 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도 교사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 3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관적 위법성론은 규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의 구성요건해당행위만이 위법할 수 있다고 한다
- ② 객관적 위법성론은 형법을 행위에 대한 평가규범으로 이해한다
- ③ 실질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 ④ 불법의 본질이 결과반가치에 있다는 결과불법론에 의하면 불법이란 객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결정규범은 책임의 판단기준이 된다
- ⑤ 형식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법규범의 형식은 명령과 금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규범을 위반하는 것에 위법성의 본질이 있다

문 3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제3채무자의 자(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잔대금이 전부명령 송달 전에 전액 지급된 양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 ㄴ.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ㄷ. 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된다
- ㄹ.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실제의 범인이 아닌 어떤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를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구속기소됨으로써 실제의 범인이 용이하게 도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국가의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ㅁ.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받아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그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ㅂ.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여 국토침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기수가 된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ㅁ
 ③ ㄱ, ㄹ, ㅁ, ㅂ
 ④ ㄴ, ㄷ, ㅁ, ㅂ
 ⑤ ㄴ, ㄹ, ㅁ, ㅂ

문 3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에서 강요된 자가 강요된 상태를 예견하고 자초하였다면 강요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② 형법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라고 규정(제10조 제3항)하고 있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규범적 책임개념은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데 대한 비난에 책임의 본질이 있다고 한다
- ④ 위법성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 ⑤ 사물변별능력이 있는 13세의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벌은 부과할 수 없으나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부과할 수 있다

문 3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특별법위반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17세의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였으나 다음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 ② 18세의 여자를 약취·유인하여 석방의 대가로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하여 취득한 경우 인질강도죄가 성립한다
- ③ 18세의 여자를 유흥주점에 팔 생각으로 유인하여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강간한 후, 유흥주점 업주에게 넘기려다 검거된 경우 미성년자유인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④ 16세의 소녀를 위계로써 간음한 경우 미성년자간음죄가 성립한다
- ⑤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는 20세의 부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녀를 넘겨받아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으나 아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녀매매죄의 기수이다

문 40.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관설은 행위자 본인이 주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논거로 한다
- ② 객관설에 의하면 개별 행위자의 주의능력이 평균인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책임단계에서 고려하게 된다
- ③ 주관설에 의하면 평균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받는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 ④ 주의의무위반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객관설에서는 행위자의 특별한 지식과 경험은 주의의무위반의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는다